

# 서면답변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유 인 환 위 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 민원봉사과장 )	답변일자	2006. 11. 28(화)
회 의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질문요지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의무보험)관련 체납자가 상당히 많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무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과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 제출

## 답변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 보험개발원으로 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거 2006년도 장기 미가입 차량 중 통보 이후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제외한 현재 미 가입 차량은 176대 이나 대부분 10년 이상인 차량으로서 멸실 또는 폐차 등으로 실제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0.5% 정도 미가입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붙임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 부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 1 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현황

2006. 11. 28 현재

연도별	부과(건/천원)		징수(건/천원)		체납(건/천원)		징수율(%)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580	1,563,687	9,159	498,567	6,421	1,061,120	56	30.2	
2002년 이전	6,442	584,532	4,497	298,860	1,945	285,672	70	51	
2003년도	2,032	160,005	1,225	57,712	807	102,293	60	36	
2004년도	1,782	130,663	1,183	49,882	599	80,781	66	38	
2005년도	3,016	399,348	1,408	64,323	1,608	335,025	47	16	
2006년도	2,308	289,139	846	27,790	1,462	257,349	37	10	

##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

구 분	치량총등록대수	보험개발원 통보	가입건수	미가입 건수	미가입율(%)	비 고
의무보험 미가입	18,537	217	41	176	0.95	

※ 미가입 건수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된 치량으로서 자동차의 멸실, 폐차 등으로 실제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약 0.5% 정도가 미가입 하였을 것으로 추정